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필서명)
-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앞면)
- ④ 통장사본
- ⑤ 입퇴원/통원 진료비영수증
- ⑥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⑦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추가서류

- 사망시: 사망진단서 원본(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애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 사망보험금 수익자 미지정시: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의료비 지원시: 경찰청, 소방청 및 기타 관공서 신고/접수 확인서
- 125cc이하 가정용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사고시: 등록증 필수제출

※ 상기 보험청구 서식 등은 시홈페이지-생활정보-재난-안전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삼성화재 해상보험 ☎ 02-2135-9453

메 일 a18997751@hanmail.net

팩 스 070-4758-8556

Q.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A. 별도가입 절차 없이, 계약기간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이면 자동가입,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됩니다.

Q.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당사자 또는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Q. 교통사고도 사고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교통사고도 사고 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대전시에 등록된 125cc이하 가정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 자전거 운전 중인 운전자, 자전거에 치인 보행자, 자전거를 끌고가는 운전자 등
- ②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보행자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자동차보험 先처리 후 본인 부담 치료비 담보)

Q.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A. 개인보험과 별개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Q. 대전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다름.



안내전화

보험사 02-2135-9453
콜센터 042-120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대전시민이면 자동가입!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대전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대전광역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인 1,000만원 대물 10,000만원
사고 의료비 지원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200만원 한도 (방문 외국인 인당 100만원)

사고 의료비 지원

대전시민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

<기본요건>

- ① 대전광역시 소유,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
- ②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주요 28대 재난 중 해당 상해와 이와 유사한 사고 의료비(28대 재난유형은 시홈페이지-생활정보-재난-안전 참조)
- ③ 경찰청, 소방청 및 기타 관공서 등에 신고/접수된 재난 상해 의료비

- 대전시민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을 의료비로 지급
- 1인당 보상한도 200만원 한도(단, 방문외국인 1인당 100만원) 공제금액 30,000원 (매 치료건 당)
- 교통사고 의료비 지원 대상
 - ① 대전시에 등록된 125cc이하 가정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 ②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보행자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보장대상

2019. 12. 9 일 이후부터 대전시민이면 모두 자동가입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국적동포 포함
- 대전시 방문 외국관광객(B1, B2, C3) 포함
(대전시 관내 상해의료비에 한함)